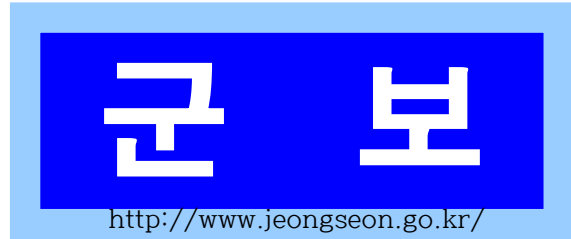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9호 2011. 8. 17.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85호 정선 하늘공원 이용에 따른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 비용 변경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1-86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456호 2011.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7
- 정선군공고 제2011-459호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정선군공고 제2011-470호 2011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13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1-85호

- 정선 하늘공원 이용에 따른 -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 변경고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 하늘공원 운영에 대한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 8. 8.

정 선 군 수

1. 매장·봉안묘역 설치 부대비용

(단위 : 원)

구 분			관리비	석물비	매장비	비고
매장	단장	기존	300,000	700,000	500,000	
		변경	300,000	800,000	500,000	
	합장	기존	390,000	800,000	500,000	
		변경	390,000	900,000	500,000	
가족봉안묘(1 2기)	기존		480,000	2,200,000	500,000	
	변경		480,000	2,300,000	500,000	

주) ① 매장비에 석물설치비 포함

② 석물비중 글씨 가격은 별도

(큰 글씨 : 자당 8,000원, 작은 글씨 : 자당 800원)

④ 가족봉안묘 유골함 추가 안치시 건별 30,000원 추가 징수

⑤ 와비(비석) 및 가족봉안묘 명패의 비문 추가시 건당 50,000원 추가 징수

2. 적용시기 : 2011년 8월 20일부터 적용

(단,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 발생시 변경고시)

정선군고시 제2011-86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새로이 설치된 지적기준점표지의 내역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0.

정 선 군 수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중·횡선수치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직각좌표계의 원 점 명					
소 재 지					
설 치 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비 고					

“ 별 지 침 부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별지]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내역

구분	명칭	번호	원점 명	평면직각중·횡선수치		설치일	표지 재질	소재지	비 고
				X(m)	Y(m)				
1	지적도 근점	1689	동부	418990.94	176881.68	2010-09-10	표석	정선군남면문곡 리590-10	
2	지적도 근점	1690	동부	418662.93	176709.15	2010-09-10	표석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4	
3	지적도 근점	1691	동부	418730.71	176732.68	2010-09-10	표석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4	

4	지적도 근접	1692	동부	418784.43	176752.23	2010-09-10	표석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4	
5	지적도 근접	1693	동부	418878.20	176809.57	2010-09-10	표석	정선군남면문곡 리64	
6	지적도 근접	1694	동부	418939.01	176849.13	2010-09-10	표석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2	
7	지적도 근접	1695	동부	418553.18	176675.13	2010-09-10	표석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4	
8	지적도 근접	1696	동부	418330.86	176825.91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322-2	
9	지적도 근접	1697	동부	418290.98	176799.34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590	
10	지적도 근접	1698	동부	418278.63	176746.29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7	
11	지적도 근접	1699	동부	418303.63	176684.69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590	
12	지적도 근접	1700	동부	418365.38	176656.33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7	
13	지적도 근접	1701	동부	418466.67	176650.87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590-24	
14	지적도 근접	1702	동부	418626.00	176826.40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127-9	
15	지적도 근접	1703	동부	418538.67	176835.15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127-9	
16	지적도 근접	1704	동부	418521.40	176765.93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127-4	
17	지적도 근접	1705	동부	418534.34	176740.83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327-9	
18	지적도 근접	1706	동부	418605.26	176848.59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127-14	
19	지적도 근접	1707	동부	418621.94	176746.03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81	
20	지적도 근접	1708	동부	418863.56	176866.40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67	
21	지적도 근접	1709	동부	418790.37	176854.32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67	
22	지적도 근접	1710	동부	418696.61	176838.76	2010-09-10	철재	정선군남면문곡 리80-2	
23	지적도 근접	1711	동부	413530.58	172165.05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0-19	
24	지적도 근접	1712	동부	413475.52	172167.05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0-19	
25	지적도 근접	1713	동부	413397.76	172068.40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산40	
26	지적도 근접	1714	동부	413352.58	171968.35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산40	
27	지적도 근접	1715	동부	413386.39	171950.03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산40-3	
28	지적도 근접	1716	동부	413266.60	171820.89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2	
29	지적도 근접	1717	동부	413171.21	171723.74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21	
30	지적도 근접	1718	동부	413599.52	172211.06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89	
31	지적도 근접	1719	동부	413683.74	172245.43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0-24	
32	지적도 근접	1720	동부	413750.74	172289.97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2-3	
33	지적도 근접	1721	동부	413717.72	172213.75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0-34	

34	지적도 근접	1722	동부	413652.88	172150.27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0-24	
35	지적도 근접	1723	동부	413561.56	172098.26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0-18	
36	지적도 근접	1724	동부	413509.95	172080.19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90-16	
37	지적도 근접	1725	동부	413468.74	172011.91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산40-2	
38	지적도 근접	1726	동부	413512.39	171948.78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16	
39	지적도 근접	1727	동부	413446.81	171905.37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79	
40	지적도 근접	1728	동부	413330.31	171764.22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4	
41	지적도 근접	1729	동부	413316.21	171711.02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21	
42	지적도 근접	1730	동부	413446.49	171831.81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20	
43	지적도 근접	1731	동부	413652.50	171894.37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산35-3	
44	지적도 근접	1732	동부	413542.19	171812.71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16	
45	지적도 근접	1733	동부	413403.40	171688.89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22	
46	지적도 근접	1734	동부	413591.64	171654.96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산34-1	
47	지적도 근접	1735	동부	413518.28	171549.75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38	
48	지적도 근접	1736	동부	413416.57	171564.22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23	
49	지적도 근접	1737	동부	413316.36	171541.26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64	
50	지적도 근접	1738	동부	413504.30	171357.23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140-15	
51	지적도 근접	1739	동부	413459.64	171415.01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151-43	
52	지적도 근접	1740	동부	413399.93	171422.40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151-43	
53	지적도 근접	1741	동부	413328.68	171497.39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64	
54	지적도 근접	1742	동부	413270.19	171563.76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63-3	
55	지적도 근접	1743	동부	413313.89	171617.52	2010-09-27	철재	정선군신동읍조 동리45-33	
56	지적도 근접	1744	동부	412360.68	168573.89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204-6	
57	지적도 근접	1745	동부	412316.98	168425.42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739-13	
58	지적도 근접	1746	동부	412235.73	168303.72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752-2	
59	지적도 근접	1747	동부	412221.57	168216.59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777-3	
60	지적도 근접	1748	동부	412101.87	168104.37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776-3	
61	지적도 근접	1749	동부	412199.14	168018.73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09-1	
62	지적도 근접	1750	동부	411997.91	167775.80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29	
63	지적도 근접	1751	동부	411918.54	167757.73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92-76	

64	지적도 근접	1752	동부	411882.50	167827.63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900	
65	지적도 근접	1753	동부	411844.74	167901.34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900	
66	지적도 근접	1754	동부	411798.88	167961.36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63-8	
67	지적도 근접	1755	동부	411879.86	167977.88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09-1	
68	지적도 근접	1756	동부	411987.02	168052.07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787-5	
69	지적도 근접	1757	동부	411818.85	167699.06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36-2	
70	지적도 근접	1758	동부	411724.67	167665.32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38-1	
71	지적도 근접	1759	동부	411623.04	167621.00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92-76	
72	지적도 근접	1760	동부	411548.58	167627.30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천 포리244	
73	지적도 근접	1761	동부	411501.16	167639.34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천 포리502	
74	지적도 근접	1762	동부	411413.95	167612.31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천 포리498	
75	지적도 근접	1763	동부	411316.25	167654.32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천 포리212-2	
76	지적도 근접	1764	동부	411204.82	167555.77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천 포리153-2	
77	지적도 근접	1765	동부	411417.63	167726.59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천 포리506	
78	지적도 근접	1766	동부	411515.70	167791.75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천 포리506	
79	지적도 근접	1767	동부	411608.40	167871.94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81-2	
80	지적도 근접	1768	동부	411711.09	167922.25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69-3	
81	지적도 근접	1769	동부	411688.67	167727.87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900	
82	지적도 근접	1770	동부	411643.89	167786.05	2011-02-07	철재	정선군신동읍예 미리899	
83	지적도 근접	1771	동부	429821.26	171364.63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신 월리산68	
84	지적도 근접	1772	동부	429808.96	171228.49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신 월리880-5	
85	지적도 근접	1773	동부	430061.61	171064.01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92-1	
86	지적도 근접	1774	동부	430157.88	171063.12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603-6	
87	지적도 근접	1775	동부	430254.70	171137.90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627-14	
88	지적도 근접	1776	동부	430290.51	171235.97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626	
89	지적도 근접	1777	동부	430323.55	171311.04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614-2	
90	지적도 근접	1778	동부	430365.97	171366.35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614-1	
91	지적도 근접	1779	동부	430430.51	171405.69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89-2	
92	지적도 근접	1780	동부	430514.55	171414.05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86	
93	지적도 근접	1781	동부	430595.81	171396.23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84	

94	지적도 근접	1782	동부	430656.32	171346.43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82	
95	지적도 근접	1783	동부	430725.84	171305.09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78-3	
96	지적도 근접	1784	동부	430766.83	171244.47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71	
97	지적도 근접	1785	동부	430769.11	171185.72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72	
98	지적도 근접	1786	동부	430777.97	171118.70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68-2	
99	지적도 근접	1787	동부	430796.99	171050.50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67-2	
100	지적도 근접	1788	동부	430696.92	171000.54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67-1	
101	지적도 근접	1789	동부	430551.40	170972.40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39-4	
102	지적도 근접	1790	동부	430050.55	170694.36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82-1	
103	지적도 근접	1791	동부	430302.40	170877.39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98-6	
104	지적도 근접	1792	동부	430378.25	170944.89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68-5	
105	지적도 근접	1793	동부	430471.95	170964.83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19-4	
106	지적도 근접	1794	동부	430516.39	171057.29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99-1	
107	지적도 근접	1795	동부	430472.28	171111.12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00-1	
108	지적도 근접	1796	동부	430393.95	171142.80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95-6	
109	지적도 근접	1797	동부	430346.91	171179.34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627-19	
110	지적도 근접	1798	동부	430427.49	171206.60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94	
111	지적도 근접	1799	동부	430537.30	171219.67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04-1	
112	지적도 근접	1800	동부	430600.95	171285.65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476-4	
113	지적도 근접	1801	동부	430676.71	171110.91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10-1	
114	지적도 근접	1802	동부	430572.41	171090.44	2011-04-20	철재	정선군정선읍애 산리501-1	
115	지적도 근접	1803	동부	430603.39	168847.62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북 실리627-18	
116	지적도 근접	1804	동부	430645.36	168846.17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북 실리627-24	
117	지적도 근접	1805	동부	430664.92	168964.76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북 실리620-2	
118	지적도 근접	1806	동부	430729.19	168949.31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북 실리757-13	
119	지적도 근접	1807	동부	430862.63	169047.20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북 실리756-14	
120	지적도 근접	1808	동부	430786.09	169197.81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북 실리704-1	
121	지적도 근접	1809	동부	430688.79	169468.27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북 실리713-2	
122	지적도 근접	1810	동부	430801.84	169750.48	2011-06-08	철재	정선군정선읍봉 양리919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1-456호

2011.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2011. 8. 3.

정 선 군 수

정선군에서는 2011. 1. 1 ~ 5. 31사이 토지의 분할·합병과 주택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 주택에 대하여 2011. 6. 1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합니다.

1. 공시기준 : 2011년 6월 1일 기준

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21일)
- 장 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대 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82번지외 147호
- 내 용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 의견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함.

4. 기타사항문의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149)

정선군공고 제 2011-459호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4.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및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선장학회의 목적, 설립, 임원, 사업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재)정선장학회의 기금조성, 재정지원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재)정선장학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제 출 처
 - 주 소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받는이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
 - FAX : 033) 560-2590
- 문의사항 : 033) 560-2186 우중기

6. 참고사항

-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
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예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선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정선군에 귀속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

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선군공고 제2011-470호

2011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및 2011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08. 11.

정 선 군 수

1. 제 목 : 2011년 1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1. 08. 11. ~ 08. 25(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불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원도 정선군 녹색환경과(☎ 033-560-2347)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2011. 1기분(독촉분)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연번	분기	읍면	부과대상번호	납부자	납부자번호	상호명	부과금	송달주소	시설물소재지	반송사유
계						7건	190,730			
1	2011 1	정선군 정선읍	0081- 0001	지영훈	430720	영광당 안경원 외2	7,9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양리 344번지 14호 1통 8반	정선읍 봉양리 344번지 14호 (봉양 6길 34)	수취인불명
2	2011 1	정선군 사북읍	0014- 0001	김대호	480128	진선희 어습,공	19,88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이사

						다방, T 월드		북리 369번 지 35호 3통 7반	35호 (사북 중 양 로 27-1)	감
3	2011 1	정선군 사북읍	0017- 0001	권용순	250121	스마일 휴게실 외(명가 네우동, 뽕미식당 등)	54,300	강원도 정선 군 사북읍 사 북리 377번 지 1호 3리 7반 스마일 휴게실 외	사북읍 사북 리 377번지 1호 (사북 중 양 로 25-1)	이사 감
4	2011 1	정선군 사북읍	0035- 0001	김천식	381202	드림 전당사	26,510	강원도 정선 군 사북읍 사 북리 397번 지 23호 11 통 8반	사북읍 사북 리 397번지 23호 (동탄 길 21-10)	이사 감
5	2011 1	정선군 사북읍	0052- 0001	황명자	550501	원다방	43,020	강원도 정선 군 사북읍 사 북리 377번지 18호 원다방	사북읍 사북 리 377번지 18호 (사북 3길 21-22)	이사 감
6	2011 1	정선군 사북읍	0127- 0001	이순덕	480105	오리랑 장어랑	19,570	강원도 정선 군 사북읍 사 북리 368번 지 19호 3통 6반	사북읍 사북 리 368번지 19호 (사북 3길 14)	이사 감
7	2011 1	정선군 신동읍	0003- 0001	정정택	215 82 00063	에콜리 안정선 골프장	19,520	강원도 정선 군 신동읍 조 동리 39번지 1호	신동읍 조동 리 39번지 1호 (새골3 길)	이사 감